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7. 14.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20.1.7.) 및 시행('20.4.8.)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종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토록 함.

□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함.
 -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 기금을 사용(안 제5조제1항)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조치비용에 기금을 사용(안 제5조제2항)
 -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 지구에 위치하고 소유자·점유자가 불분명한 시설 등의 안전조치 비용
 -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나.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함 (안 제8조)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동두천시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보

-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 5. 삭 제
 - 6.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 7.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구입·임차
 - 8.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 9. 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 10.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련 제경비
- ② 기금은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나.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다. 사유시설의 경우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및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한 점검용역(점검용역은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라. 재난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마. 자연·사회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입차·구입

바.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재난대응대비 훈련 경비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
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
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
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
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
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한다)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
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
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

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확보 대책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

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

가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

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

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

처계획(EAP) 수립, 재해복

구사업 분석평가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

조사,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 안전진단 등

8.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단서 신설>

제8조(회계공무원) ① -----

----.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p>② (생 략)</p>	<p><u>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4. 8] [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 일부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부칙 <제30595호,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7. 6. 12.]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943호, 2017. 6. 12.,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안전총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3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31.>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1.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개정 2017. 1.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 2017.6.12.>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용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액의 예치·관리) ①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6., 2017. 1.31.,2017.6.12.>

③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1.29>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삭 제 <2008.4.4>
 6.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신설 2007.4.13>
 7.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구입·임차<신설 2011.11.29>
 8.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신설 2011.11.29>
 9. 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신설 2011.11.29>
 10.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신설 2011.11.2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련 제경비 <신설 2011.11.29., 개정 2017. 1.31.>
- ② 기금은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7. 6.1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 다. 사유시설의 경우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및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한 점검용역(점검용역은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라. 재난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 마. 자연·사회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임차·구입
 - 바.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경비
 -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 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6.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용자
-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라.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자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 8.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29., 2017.6.12.>
-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 1.31.>
-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개정 2005.4.13, 2009.8.17><개정 2013.7.26><개정 2014.9.1, 2015.5.2.>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인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2017. 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1.11.29>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1.29>

1.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동두천시 소속 부서장과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기금을 유치한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1.11.29. 2017. 6.12.>

2.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1.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11.29., 2017.6.12.>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4.4> <개정 2017.6.12.>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6.12.>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7. 6.12.>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31., 2017.6.12.>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12.>

제13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 - 21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전면개정(‘20.1.7.) 및 시행(‘20.4.8.)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종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나.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재무회계」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토록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함
 -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1항 제1호)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 조치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2호)
-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에 위치하고 소유자·점유자가 불분명한 시설 등의 안전조치 비용
 -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경기도 재무회계」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함 (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연재난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7)), 전화 : 031-8008-8432, 팩스 : 031-8008-6098, 전자메일 : gmlim20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과장 직위·성명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팀장 직위·성명	자연재난예방팀장 유희준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 임기문(8008-843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p> <p>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p> <p>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p> <p>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p> <p>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p> <p>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임차, 자재(물품·장비)비축용 창고의 신축·임차·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p> <p>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p> <p>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p> <p>카.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p> <p>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p> <p>2.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p> <p>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p> <p>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p> <p>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p> <p>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p> <p>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p> <p>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p> <p>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p> <p>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임차, 자재(물품·장비)비축용 창고의 신축·임차·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p> <p>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p> <p>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p> <p>카.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p> <p>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p> <p>2.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p> <p>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p> <p>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p> <p>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p>

현행	개정안
<p>타.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p> <p>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p> <p>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p> <p>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사용 CCTV 설치 등</p> <p>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p> <p>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p> <p>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p> <p>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p> <p>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p> <p>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p> <p>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p> <p>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p> <p>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p> <p>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p> <p>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p>	<p>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에 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p> <p>7. 법 제 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p> <p>9.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p> <p>10.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 2. (생략) ② ~ ③ (생략)</p>	<p>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참고

현행조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전문개정 2017.4.12.]
<개정 2018.10.1.>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입차·구입 [전문개정 2017.4.12.]
 -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개정 2017.4.12.>
 -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개정 2017.4.12.>
 -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입차, 자재(물품·장비)비축용 창고의 신축·입차·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9.4.29.]
 -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 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신설 2017.4.12.]
 - 카.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신설 2017.4.12.]
 - 타.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8.10.1.] <개정 2019.4.29.>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17.4.12.>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개정 2017.4.12.>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사용 CCTV 설치 등 <개정 2017.4.12.>
 -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개정 2017.4.12.>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7.4.12.>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개정 2017.4.12.>
 -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17.4.12.>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설 2017.4.12.]
 -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신설 2017.4.12.]
 - 7. 법 제 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5.04.30.>
 -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2.12.28.]
 - 9.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전문개정 2017.4.12.]
 -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4.12.]
- [전문개정 2011.12.2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 ② 삭제 <2015.07.17.>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개정 2009.3.12.>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12.>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4.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1.4.7., 2014.9.24., 2015.10.13., 2018.10.1.>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8.10.1.>
-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4.6.>
-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4.6.]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26.]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6.]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3.12.] [단서신설 2012.12.28]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12.28.>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4.12.]
6.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10.13.]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10.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 ②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 ③ 경기도 금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2.5.11., 2015.04.30., 2017.4.12.>
- ②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용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5.11., 2017.4.12.>
-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용계획과 결산보고)

-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6.]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2.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2.4.6.>